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보 도 참 고 자 료	보다 나은 정부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18. 11. 14.(수)	담당부서	동아시아FTA협상담당관
담당과장	김영만 과장(02-734-1864)	담 당 자	이윤진 사무관(02-734-1870)

최종단계 협상중인 RCEP, 2019년 타결키로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 개최(11.14, 싱가포르) -

□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일본·중국·인도·호주·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정상회의가 11.14.(수) 오후 싱가포르에서 열렸다.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참여국 정상은, 올해 협상이 큰 실질적 진전을 도출함에 따라 최종단계(final stage)에 진입하였다고 평가하고, 2019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최종 타결하겠다는 결의를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 아울러, 각국 정상들은 보호무역주의 등 세계경제가 직면한 위협 속에서 개방적인 교역과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현대적이고, 포괄적이며,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타결이 필요성하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였다.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지난 2013.5월 1차 협상을 개시한 이래 약 5년 반 가량 이어지고 있으며, 올해까지 총 7개 장(챕터)*을 타결하고, 상품·서비스·투자시장 개방을 위한 막바지 협상이 현재 진행중에 있다.

* 통관, 정부조달, 경제기술협력, 중소기업, 제도규정, 위생 및 검역조치, 기술규제 및 적합성평가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세계인구 절반과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자유무역협정(FTA)로써,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고, 아시아·태평양 역내 경제통합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대(對) 세계비중('17년, IMF): GDP 25조 달러(32%), 인구 36억 명(49%), 교역 10.2조 달러

○ 특히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체결하면, 아세안과 인도 등 신남방정책 핵심 거점국가들에 대한 우리의 무역·투자 기반을 다변화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 확대가 기대된다.

붙임: 1. RCEP 정상회의 공동성명(비공식 번역본)
2. RCEP 추진동향

참고 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공동성명(비공식 번역본)

1. 우리, RCEP 참여국(아세안 10개국과 아세안과 FTA를 체결한 호주, 중국, 인도, 일본, 한국, 뉴질랜드)의 정상들은 2018년 11월 14일 싱가폴에서 제2차 RCEP 정상회의를 계기로 함께 모였다.

2. 우리는 이 자리에서 역내 교역과 투자를 활성화하고, 세계경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개방적인 교역과 투자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현대적이고, 포괄적이며,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경제 파트너십을 달성하자는 협상 개시 시점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3. 우리는 세계경제가 직면한 작금의 역풍을 감안할 때 RCEP협상 타결의 책무가 더욱 시급하고 중요해졌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개방적이고, 포괄적이며, 규범에 기반한 교역시스템을 활성화하고, 모두를 위한 무역체계가 가능함을 세계에 보여주기 위해 조속히 RCEP을 타결하는데 책임을 함께하기로 하였다.

4. 우리는 2017년 제1차 RCEP 정상회의 시 2018년 RCEP 협상타결을 위해 주력할 것을 장관들에게 지시하였으며, 이를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다하기로 한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하였다.

5. 우리는 2018년 RCEP 협상이 실질적 진전을 이룬 점을 환영하였다. 우리는 또한 RCEP 협상을 최종단계로 진전시켰다. 아울러, 우리는 2019년에 현대적이고, 포괄적이며,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RCEP을 타결할 것을 결의하였다.

6. 우리는 올해 5개 챕터를 포함해 지금까지 총 7개 챕터(경제기술협력, 중소기업, 통관, 정부조달, 제도규정, 위생 및 검역조치, 기술규제 및 적합성 평가)가 타결된 점을 환영하였다. 협상 현황은 공동성명의 부속서에 설명되어 있다. 우리는 남아있는 모든 챕터와 부속서를 타결하기 위한 모멘텀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7. 우리는 RCEP의 포용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기업부문, NGO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하여 RCEP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논의를 지속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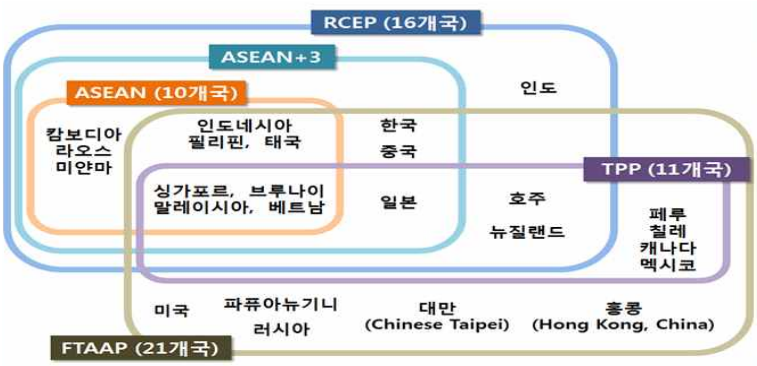
참고 2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추진동향**

〈 RCEP 개요 〉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
▲**(참여국)** ASEAN 10개국 + ASEAN과 FTA 체결한 6개국(한 중, 일 호, 뉴, 인) = 총 16개국

Ⅰ 추진 경위

□ 2012. 11. 20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계기 **RCEP 협상개시 선언**



□ 2013.5월 협상개시 후 **24차례 공식협상** 및 **12차례 장관회의** 개최

□ 2017. 11. 14 RCEP 정상회의에서 **2018년 실질타결 목표** 설정

Ⅱ RCEP 협상 의의

□ **세계 인구의 절반과 세계 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 경제 블록으로 RCEP 체결시 안정적인 교역·투자 기반 확보 기대

* RCEP 對세계비중('17년, IMF): GDP 25조불(32%), 인구 36억명(49%), 교역 10.2조불(29%)

□ 상대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높고 젊은 인구 비중도 높아**** **미래 유망시장**

* '17년 성장률(IMF): 中 6.8% / 印 6.7% / 베트남 6.3% vs 美 1.6% / 유로존 1.7%
** 중위연령('17, UN): 인도 26.7세, ASEAN 29.2세 vs 한국 40.8세 일본 46.3세, 미국 37.6세

□ 원산지 규범 통일 등으로 우리기업의 **역내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활성화**

◈ RCEP 체결시 **경제적 기대효과**('12, KIEP)
- **(실질 GDP)** 10년간 **1.21~1.76%** 증가, **(소비자 후생)** 10년간 **113.51~194.56억 달러** 증대

Ⅲ RCEP 협상 동향

□ **(전반) 총 20개 챕터*** 중 **7개 챕터**(통관, 정부조달, 경제기술협력, 중소기업, 제도규정, 위생 및 검역조치, 기술규제 및 적합성평가)**가 타결**

* 상품, 서비스, 투자, 경제기술협력, 지재권, 경쟁, 법률제도, 전자상거래, 원산지, 통관, 위생 및 검역조치(SPS), 기술규제 및 적합성평가(STRACAP), 분쟁해결 등 20개

□ **(상품) 15개국 모두에 적용되는 공통양허 방식 원칙**으로, 기존 양자협상 대비 더 큰 폭의 **기체결 FTA 추가자유화 기대**

○ 우리측은 **한-아세안/인도 등** 오래되고 상대적으로 개방수준이 낮은 기존 FTA 대상 **철강·화학·섬유 등 주력 품목 추가개방 추진**

□ **(서비스) 포지티브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기체결 대비 FTA 높은 개방수준 달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상 지속 중

* 기체결 FTA 서비스 개방수(총 155개 중)는 필리핀 61개, 인니 54개, 태국 74개, 인도 88개 등 이었으나, 현재 RCEP에서는 추가적 서비스 분야의 개방 기대

□ **(투자)** 한-아세안/한-중 FTA의 경우 투자 유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RCEP에서는 최초로 투자 유보안 교환** 및 유보수준 논의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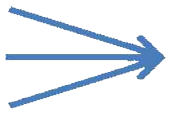
□ **(규범) 통관, 정부조달** 등 일부 챕터는 **타결**되었으나, 원산지, 지재권 등 여타 분야는 이견 축소를 위해 논의 지속 중

○ 특히, 원산지의 경우 RCEP 참여국과의 **기체결 FTA마다 다른 원산지 기준**을 품목별 **단일 원산지 기준으로 통일**하여 FTA 활용률 제고* 기대

* FTA 수출활용률('17)은 한-아세안 47.8%, 한-인도 67.5%로 낮으며 복잡한 원산지 규정이 원인으로 파악

<예시 : 생활용품 A품목군의 경우>

- 한-아세안/중 FTA : CTH or RVC40
- 한-인 FTA : CTSH+RVC35
- 한-베/뉴/호 FTA : 세번별로 상이



RCEP

CTH or RVC40

* CTH or RVC40 : 역외산 원료를 수입하여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산 부가가치 40%를 충족할 경우 원산지로 인정